

의안번호

제2017-1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서

심의안건

○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(안 제8조의2)
-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적용배제 신설(안 제17조)
- 조례 유효기간 연장(안 부칙 제2조)

심의결과

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.

2017년 2월 20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

구분	성명	감면 조례 개정		기타의견	서명 또는 날인
		가	부		
위원장	제영수	○			
부위원장	고재풍	○			
위원	김승진	○			
위원	박귀경	○			
위원	안소영	○			
위원	유정섭	○			
위원	이경선	○			
위원	장택식	○			
위원	김종만	○			